

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1. 14.

담양군의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,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, 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1. 14 ~ 11. 19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
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,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걷기길”이란 황토나 자갈,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담양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)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,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해야 한다.

제5조(맨발걷기길 조성 등)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 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 3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 4.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
-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.

제6조(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)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걷기길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2. 맨발걷기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관리
3.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
4.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5.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
6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